

한국제약바이오협회

Korea Pharmaceutical and Bio-Pharma Manufacturers Association

우 06666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61 / 전화 02-6301-2169 / 전송 02-6499-2134 / sjh@kpbma.or.kr

문서번호 : 제약바이오정책팀-2024-01663

시행일자 : 2024-07-23(화)

수신 : 회원각위

참조 : 개발 및 허가부서장

제목 : 「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 고시 알림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-12332(2023.12.20.), 7202(2024.7.22) 관련입니다.
2.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시각·청각장애인을 위한 '점자 및 음성·수어영상변환용 코드'를 표시하는 내용으로 「약사법」이 개정(법률 제18307호, 시행 2024.7.21.)되고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이 개정(총리령 제1958호, 시행 2024.7.21.)되었습니다.
3. 이에, 표시대상 의약품, 표시사항, 표시방법 및 기준의 세부사항 등 법률 및 총리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「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(식약처고시)를 붙임과 같이 개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4. 참고로, 동 개정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식약처 누리집 → 법령/자료 → 법령정보 → 고시훈령예규 (고시전문) 및 제개정고시에서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※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보 제공은 개정일로부터 일정일 소요

붙임 1.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(개정문) 1부.

2.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전문(개정 후) 1부. 끝.

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



※ 이 문서는 협회 회원사에 한해 홈페이지(www.kpbma.or.kr) '공지사항'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